



제 7842 호

경기도보

발행일 2025년 9월 19일

발행 경기도

도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시 제2025-333호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이천보고가」 등 1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이천보고가」 등 1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9. 19.
경 기 도 지 사

1. 고시명 :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이천보고가」 등 1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도지정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가평군	이천보고가 가평연하리향나무	가평군 상면 연하리 226 외	허용기준 조정
2	파주시	교하향교	파주시 쇠재로 91 일원	허용기준 조정
3	의정부시	망월사혜거국사부도 망월사천봉당태홀탑	의정부시 호원동 산92-15외	허용기준 조정
4	의정부시	망월사천봉선사탑비 의정부회룡사오층석탑 의정부회룡사석조	의정부시 호원동 산89-1	허용기준 조정
5	의정부시	의정부2동성당	의정부시 의정부동 429-6	허용기준 조정
6	광주시	청량당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허용기준 조정
7	광주시	현절사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310-1	허용기준 조정
8	광주시	침괘정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591-1	허용기준 조정
9	광주시	유정리좌불상	광주시 도척로699번길 47-8	허용기준 조정
10	광주시	지수당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124-1	허용기준 조정
11	광주시	장경사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676	허용기준 조정
12	광주시	추곡리백련암부도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산25-1	허용기준 조정
13	광주시	우리절 5층석탑 우리절 석조부도 2기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1 외	허용기준 조정
14	양평군	양평지평리삼층석탑 지평향교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333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방로 107(지평리) 일원	허용기준 조정
15	양평군	김병호고가	양평군 용문면 오촌리 181번지	허용기준 조정
16	양평군	양평창대리고가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 333-6(창대리)	허용기준 조정
17	양평군	운계서원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192번길 16-21(덕촌리)	허용기준 조정
18	양평군	이항로선생생가 노산사지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535-6외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산69-7번지	허용기준 조정

나. 관련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자체 처리함.

라. 도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경기도소개 > 위원회 안내 > 경기도위원회 현황 > 경기도유산위원회 > 심의결과

3.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4. 연락처

-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4 / 팩스 031-8008-4429
- 주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가평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1-580-4320 / 팩스 031-580-2069
- 주소 : (우 12414)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0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문화예술과 (아동동)
- 의정부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28-4334 / 팩스 031-828-4339
- 주소 : (우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동)
- 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760-4821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송정동)
- 양평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1-770-2455 / 팩스 031-770-2804
- 주소 : (우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붙임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이천보고가」 등 1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각 1부.

○(파주시) 교하향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 5m이하	○최고높이 8m이하
3구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높이 3m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땅깍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